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0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장경태·김성환·이재관

이병진 • 이학영 • 박희승

강준현 • 박지원 • 김 윤

서미화 · 양부남 · 민형배

채현일 · 이광희 · 황명선

정일영 • 박해철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서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 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왜곡

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통제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 제목 "(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을 "(대통령령등의 규범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등"을 "등(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를 "제1항에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의된 의안이"로,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대통령령의 효력정지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날부 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당해 대통령령등을 공포할 수 없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⑦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의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통령령등의 규범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 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 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등이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 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 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③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 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 의할 수 있다. 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

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 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 한다.
-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 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 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 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 ④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 한 대통령령등 또는 제3항에 따 라 발의된 의안이-----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 해 대통령령의 효력정지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받 은 날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당해 대통령령등을 공포할 수 없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가 법률의 취지 또는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 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 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규정된 사항 외에 대통령령등의 규범통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